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3598 등록면허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청장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681,000원 및 지방교육세 136,2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1. 처분의 경위

가. 은행업을 영위하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2015. 9. 1. 주식회사 C을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고 법인명을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합병에 따라 원고는 피합병법인이 대출채무자들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민법 제187조에 의해 별도의 등기 없이 포괄승계하였는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2항(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 상당 세액을 경감받기 위하여 피합병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2016. 6. 30.까지[1] 일괄적으로 마쳤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합병법인이 근저당권자인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2015. 9. 4. 등록면허세 682,500원 및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 136,500원(이하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 2015. 9. 2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등기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 소정의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을 위한 등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1,000분의 2 상당을 감면 대상으로 삼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등기의 등록면허세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 ① 지방세법 제28조 제

1)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2항에서도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1항 제1호 다목 2)항을 적용할 경우와 ②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을 적용할 경우 각 등록면허세 등의 구체적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2019. 11. 14. 이 사건 등기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건당 6,000원'을 감면 대상 세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681,000원(682,500원 - 1,500원) 및 지방교육세 136,200원(681,000원 × 2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구분	① 다목 적용 시 (실제 신고납부액)	② 마목 적용 시 (정당세액)
채권최고액	1,365,000,000원	
세율	0.2%	
산출세액	2,730,000원	6,000원(건당)
감면율	75% 감면	75% 감면
등록면허세액	682,500원	1,500원
지방교육세	20% 가산	20% 가산
세액 계	819,000원	1,800원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 6. 이 사건 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이 적용되는 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은 그 문언상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을 위한 등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등기 경료와 관계없이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곧바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등기는 단지 근저당권 취득 이후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처분 등을 위하여 한 등기인 점, ②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에서 정한 저당권이전등기와는 그 실질이 다르고 단순히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기에 불과한 점, ③ 과세관청은 1996. 9. 13.자 유권해석 등에서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 명의 변경은 '그 밖의 등기'{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8호[2]}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는 점[3]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 법령의 문언, 취지, 체계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의 등기'가 아닌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3)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0. 2. 18. "소정의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저당권 명의가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되는 등기의 경우 이는 저당권의 이전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원고 주장의 종전 유권해석과 다른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1)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등 참조), 그 등기나 등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적 조세이기 때문에 등기 · 등록행위는 내부의 실질적인 권리자의 유무 또는 정당성 · 합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 · 등록을 한 외형적 요건을 갖추면 과세객체가 된다할 것이다.

비록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합병을 통해 민법 제187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근저당권이 원고에게 귀속되기는 하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이상, 그와 같은 등기행위 자체의 외형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므로 내부의 실질적인 권리자의 유무 또는 정당성 · 합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어야 하고,[4] 이러한 점은 그 과세표준의 산출 · 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각 등록 · 등기에 대한 일반적인 세율을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에서는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면서 (근)저당권의 이전의 경우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라 명시하고 있다.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에는 특정승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 합병 등과 같은

4) 심지어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포괄승계로 이전되는 것도 포함되고, 회사가 합병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존속하거나 신설된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이 때 그 등기 형식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아닌 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합병 전 회사와 합병 후 회사의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5]에 의하면, 금융회사들 간의 합병인 이 사건 합병과 같은 소정의 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이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2. 12. 31.까지 면제하도록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면서 그 기한을 2014.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57조가 제57조의2로 이관되었고, 그 제57조의2 제2항은 합병법인이 소정의 합병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2015. 12. 31.까지 산출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 상당액을 경감하도록 개정되었다(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경우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이후 개정된 바 없다).

이와 같은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보면, 등록면허세율의 감면 범위 등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4) 본질적으로 합병은 피합병법인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차원에서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과 그 성질상 다를 바 없다. 그

5)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되면서 제28조의2 제2항으로 이관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런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서는 각 재산권 등의 상속으로 인한 것에 관하여 별도의 항목을 두어 차별적 취급을 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가령,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관하여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로 정하면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로 보다 감경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저작권 등, 특허권 등,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상속으로 인한 이전의 경우 상속 외의 원인으로 인한 등록 내지 이전에 비하여 낮은 세율(또는 세액)을 적용하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상속으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체계적 해석에 의할 때, 이 경우 단순히 보충적 규정인 같은 호 마목('그 밖의 등기') 소정의 '건당 6,000원'의 세액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상속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 소정의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상당의 등록면허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합병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경우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소유권 외의 물권의 이전'과 달리 등록면허세율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할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면,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 · 합리적 해석인 것이라 판단된다.

5) 나아가 제2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항목들의 등록면허세율 규모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합병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에서 정한 세율의 규모가 비합리적이라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만5천원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1)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나.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광업권의 변경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6만6천5백원

2) 감구(減區): 건당 1만5천원

다.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8의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조광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9. 어업권 등록

가. 어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6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만2백원

나. 어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1천원

다.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6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4만2백원
 다.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2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11.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2천원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1만2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을 경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고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讓受)받은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讓受)받은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
2.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1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는 합병

3.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 간의 합병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
2. 안전행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 간의 합병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끝.